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78
----------	----

제출연월일 : 2011.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 (2005.8.4. 법률제7663호로 전부개정 전)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5. 6. 24.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세입재원인 공유 재산 매각대금,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등의 감소로 특별 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폐지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입법예고 : 2011. 03. 11 ~ 03. 31(21일), 제출의견 건수 : 1건

- 제출의견 : 반대의견

- ① 지방자치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공유재산관리 운영 기준을 정하여 재산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일반재산 매각은 가치만큼 대체재산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② 본 조례가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취득계획 없이 처분만 하고 일반회계 위기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사전. 사후 군민에 대한 이해설득이 쉽지 않을 것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시행 2011. 9. 9] [법률 제10439호]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